

[사 건 명] 행심 2017 - 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금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24. 인천광역시 △구 ▮▮▮로 ●●●(■●●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 중 제지상2층 일부(면적 258.72㎡, 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 라 한다)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영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중학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245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0m,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2017. 4. 10.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지 방문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

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근거로 “금지” 결정된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7. 4.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7. 5.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신청지 주변으로 통학하는 학생수 200명(20.2%)이라는 내용은 학교장이 어림짐작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통학 학생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추후 청구인의 ■■중학교장으로부터 신청지 주변 통로는 주통학로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비합리성 및 부당성의 근거로서 주장내용을 보충함)

나.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건물에 학원이 있어, PC방이 설치되면 학원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지만, 이는 고정관념에 따른 기우이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은 인천○○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PC방(○○○○ PC방) 설치를 허용하여 현재도 영업 중인데 반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금지하였으니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며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현재 조모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PC방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통학하는 학생수(20.2%)에 대해 오류 있는 정보라 주장함에 따라 통학현황을 재조사(2017.7.11.)하였고, 조사결과 재적 학생수 996명 중 231명이 신청지 근처에 거주하며 신청지 맞은편 인근 주택 빌라에 거주하는 학생까지 합하면 재적학생수의 20%이상이 이 사건 신청지를 주통학로로 통과하고 있으니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육부에서 주통학로의 기준을 재적학생 수의 1/5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주통학로를 재적학생수의 1/5(20%)로 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학원에서 학생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동일건물에 학원이 있는 PC방이 동일건물에 학원이 없는 PC방보다 유해도가 낮다는 주장은 극히 개인적인 주장이며 타시도 PC방 재결서의 주장도 상황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일부내용만 확인하여 주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천●●초등학교 근처의 ○○○○ PC방(■■동 ■■■■-■) 장소는 인천●●초등학교가 개교(2008.3.)하기 전 2007.11.29.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1항, 2항, 제1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중학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245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0m,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건물 전체는 청구인의 조부의 소유로서 이 사건 신청지를 임차해 주었다가 약 1년 7개월 동안 공실인 상태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를 주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영업을 하고자 2017. 3. 24.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2017. 4. 10.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지 방문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피청구인

은 같은 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현재도 공실인 상태의 이 사건 신청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조모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PC방 영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 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선고 96누 8285판결)

(2)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위치한 곳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제처분이 있어야 청구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영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 [아래의 가)항 내지 라)항]을 참작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이 주통학로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중학교장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통로가 주통학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중학교 학교장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주통학로는 아니라 학교 뒤편에 인접한 아파트 근처(일반주거지역)이므로 본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거주하거나 통학로와 인접한 위치이므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에 PC방이 들어오게 되면 학습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점.

나) 청구인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거론하며 동일한 건물에 이미 학원, 독서실 등이 운영 중인 경우에도 PC방 설치를 허용한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청지에 PC방이 설치되면 학원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관념은 기우나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신청지가 그 다른 지역과 동일한 조건하에 있음을 전제로 학습 환경의 유행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는 점.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천○○초등학교 근처의 대한민국 ○○○○ PC방 (■■동 ■■■■■-■) 장소는 인천○○초등학교가 개교는 2008. 3.경이며, 위 ○○○○ PC방에 대한 심의는 개교일 전인 2007.11.29.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의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인천

●●초등학교 주변에서 운영되는 PC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및 형평성 결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점.

라) 청구인은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PC방 영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건물 전체가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조부의 소유인 점, 청구인은 현재 독립된 주거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가 공실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월차임 부담이 없고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의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임대차 등을 통한 이 사건 신청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가 PC방으로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조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모의 부양을 거론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여전히 생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조모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적인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함)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